

# ○ ○ 시

수신 ○○여객 주식회사

(경유)

제목 수송시설 확인신청 처리 알림(○○여객)(수정)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민원 제 호로 제출하신 수송시설 확인 신청에 대한 점검 결과 보유차고 면적기준, 사무실, 휴게실, 교육훈련시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하여 수송시설 확인 처리 통보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□ 확인 내용

항목	면허기준(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)	확인 사항	확인 결과
사무실 및 영업소	○수입금 및 배차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 수단 ○운행계통의 기·중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	○ 위 치 - 주사무소 : ○○동 ○○○ ○ 사무설비 등 설치 내역 : 설치 사무실 : 27㎡	적합
정류소	○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, 매표시설 및 표지등을 설치할 것	○ 정류소 목록 확인	적합
차고설비 및 부대시설	○ 보유차고의 면적기준(최저)이상 확보 - 대형 : 대당 36~40㎡ - 중형 : 대당 23~26㎡  ○ 차고는 포장을 할 것  ○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·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  ○ 차고지내 원활한 진출입 가능여부 등	○ 위 치 - 차고지 : ○○동 ○○○ - 차고지 ○○로 ○○○ 외 3필지 - 차고지 : - 차고지 : ○ 보유차고 면적 : / / ㎡ - 기사용면적 : 3. / ㎡ - 잔여면적 : / / ㎡ - 포장여부 : 포장 ○ 점검·정비시설 - : 159㎡ ○ 세차시설 - : 75㎡ ○ 충전소 - (임대) - : 62㎡ - : 57.8㎡ ○ 차고지내 진출입 가능여부 : 가능	적합
기타운송 부대시설	○ 휴게실 및 대기실을 갖출 것 ○ 교육훈련시설을 갖출 것	○ 교육훈련실 - : 36㎡ ○ 휴게실 및 대기실 - : 28㎡ - : 36㎡ - : 28㎡	적합

3. 아울러 차고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송시설 확인을 신청하여 주시고 미신청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